

중국인을 위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

§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

- 2017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납세지(주소지)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* 종합소득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)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- 비거주자이더라도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*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.
-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,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-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.

§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

-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나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면 편리하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§ 소득세를 적게 신고·납부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

- 산출세액의 20%(허위기장, 허위증빙 수취 등의 경우에는 40%)가 무(과소)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
-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0.95%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- 1 -

§ 종합소득세의 신고·납부기한과 환급시기

-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2018. 5. 31.입니다.
 - *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%이내의 금액을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.
-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2018. 6. 30. 이후에 확정신고서에 적은 계좌(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)로 지급됩니다.
 - * 중국은행 등 외국계은행 계좌로는 이체불가

§ 종합소득세의 신고·납부방법

- 종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나,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를 통한 3자 통화 서비스(영어 포함 20개 외국어)가 가능합니다. 통역이 필요하시면 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세요.
 - * 국번없이 1345-0-# 또는 1588-5644-3, 중국어 상담사와 통화 또는 3자 통화 가능
-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 - 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는 한글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홈택스 → 로그인 → 비회원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

-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이 과세 대상기간이고 출국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✓ 국세전자납부란?

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,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(카드론)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 인터넷 또는 전화(ARS)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(인터넷뱅킹, 폰뱅킹)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.

- 2 -